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구미경 의원
- 의안번호 : 제2251호
-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6일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2. 제 안 이 유

- 2024년 1월 2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항이 개정되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 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따르며,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 요 내 용

- 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를 규정함(안 제7조)
- 아.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3조의 3(유해야생동물의 관리)의 개정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재산·인명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유해야생동물 관리방안의 하나로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 세부적으로 안 제2조는 “유해야생동물”을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붙임1 참조)으로, “먹이주기”는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직접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집(땃)비둘기²⁾가 대표 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해당 종에 대한 상세 조치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3조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제1호) 등을 적시하였으나, 세부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1) 2025년 1월 24일 시행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안 제5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녹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³⁾,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⁴⁾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견은 없음.
- 안 제8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소관 보조기관에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기반 시설의 경우 그 범위가 공항, 철도, 도로(고가도로, 지하도로 등), 항만, 장사시설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므로 위 시설에 대한 금지구역 지정은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케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붙임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빨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구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8.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낙시터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등의 사업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